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로과장 배치열)

□ 제안이유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7359호, 2005. 1.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합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소유자 거주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비거주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규정함.(안 제4조)
- 제설·제빙작업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규정함.(안 제5조)
-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규정함.(안 제7조)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에는 제설·제빙작업 도구를 비치·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주 동기는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내집앞의 눈은 건축물 관리자가 치우는 풍토를 조성하는 시민의 책임 의식 제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건축물관리자가 집앞의 눈을 치우지 않았을(조례규정을 위반)경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		○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하는 것으로써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내집앞 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조치방법은 ?		○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법적인 시비가 가려질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도시민들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 주말부부, 장기출타 등 현실적으로 눈을 치우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민들에게 조례제정 필요성을 사전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으면 눈을 치우지 못하는 주민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도로의 관리·감독기관인 시 정부의 책임 한계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봄.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61호
의결 년월일	2006.12.21 (제132회)

제출년월일 : 2006. 11. 13.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7359호, 2005. 1.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합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소유자 거주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비거주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규정함.(안 제4조)
- 다. 제설·제빙작업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규정함.(안 제5조)

라.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에는 제설·제빙작업 도구를 비치·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2.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